

서울特別市麻浦區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第1條(목적) 이 조례는 地方再政法 第16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麻浦區財政計劃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기능) 서울特別市麻浦區財政計劃審議委員會 (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서울特別市 麻浦區의 財政計劃樹立에 관한 서울特別市 麻浦區廳長(이하 “區廳長”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事項을 審議한다.

1. 地方財政 運營 方向에 관한 事項
2. 財源開達에 관한 事項
3. 投資事業 수립에 관한 事項
4. 기타 區廳長이 부의하는 事項

第3條(구성) ①委員會는 委員長1人과 副委員長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副區廳長이 되며, 副委員長은 總務局長이 된다.

③ 委員은 財務局長, 市民局長, 都市整備局長, 建設局長, 監査室長, 總務課長, 財務課長, 稅務1課長, 財政分野에 경험이 풍부한 專門家, 지역대표중에서 區廳長이 委囑하는 자가 된다.

④ 委員중 委囑委員은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第4條(委員長 및 副委員長の 職務) ①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委員會의 회무를 통할 한다.

②副委員長은 委員長을 보좌하며, 委員長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대행한다.

第5條(회의) ①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이를 소집한다.

②委員會의 會議는 定期會議와 臨時會議로 구분하며 定期會議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臨時會議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委員會의 會議는 재적위원 過半數의 出席으로 개최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委員長이 決定한다.

第6條(간사) ①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간사1人을 두되, 幹事는 企劃豫算課長이 된다.

②幹事는 委員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7條(실무대책반) ①委員會에 上程할 議案을 미리 검토하고 關係 部署間의 의견조정과 委員會로부터 委任받은 事項의 處理를 위하여 委員會에 실무대책반을 들 수 있다.

②실무대책반의 構成, 運營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정한다.

第8條(審議案件의 配付) 위원회에 부의할 案件은 特別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전에 各 委員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檢討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第9條(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및 실무대책반은 業務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關係機關, 部署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提出등의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

第10條(審議錄) 幹事는 委員會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事項이 포함된 審議錄을 作成 備置하여야 한다

1. 會議開會 日時 및 場所
2. 出席委員 설명
3. 審議事項
4. 審議結果
5. 기타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11條(수당) 公務員이 아닌 委員이 委員會에 出席할 때에는 豫算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第12條(施行規則)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規則으로 정한다.

부 칙

이 條例는 공포한 날부터 施行한다.